#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
[부산고등법원 2016. 4. 27. (창원)2015누12154]

## 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)

【피고, 피항소인】 창원시장 외 3인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화우 외 2인)

【피고 3 보조참가인】인천광역시장 (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)

【제1심판결】창원지방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4구합21637 판결

【변론종결】2016. 4. 6.

### 【주문】

]

- 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- 2. 항소비용(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)은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에 대하여 피고 창원시장이 2012. 12. 10.에 한 경정거부처분, 피고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 2012. 12. 28.에 한 경정거부처분,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12. 12. 7.에 한 경정거부처분, 피고 고양시장이 2012. 12. 14.에 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### [이유]

#### 11. 처분의 경위

- 가. 원고는 2001. 7. 4.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,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, 지점 등기 내역은 순차로 아래 표 1, 2와 같다(이하에서 표 2. 기재 각 지점을 순번에 따라 "창원지점, 인천지점, 부산지점, 고양 지점"이라 하고, 통틀어 "이 사건 각 지점"이라고 한다).
- [표 1]기간본점 소재지2001. 7. 4. ~ 2003. 3. 24.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2003. 3. 25. ~ 2012. 6. 4.서울 강남구 논현동 70-132012. 6. 5. ~ 현재서울 중구 퇴계로 100, 11층 1101호
- [표 2]순번설치일자지점 소재지이전일자지점 소재지12002.1.2.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56(봉암동) 22003.7.25.인천 남동구 간석동 556-22012.11.15.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, 상가 비동 101호(송도동, 센트럴파크1차)32003.8.4.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-322, 3층2005.3.31.부산 진구 전포2동63242002.1.2.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0302003.3.18.고양 시 일산구 장항동 852 현대에뜨레보 빌딩 101, 102호
- 나. 원고는 2011. 1. 1.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(이하 통틀어 "이 사건 리스차량"이라고 한다)를 취득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 사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을 마치고, 그 무렵 위 각 지점을 관할하는 도지사, 광역시장 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 창원시장(창원지점),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(인천지점), 피고 부산광역시차 량등록사업소장(부산지점), 피고 고양시장(고양지점)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취득세 (이하 "이 사건 취득세"라고 한다)를 자진신고·납부하였다(단, 이 사건 리스차량의 등록관청은 피고들인 경우와 서울 특별시 강남구청장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).

다.

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"강남구청장"이라고 한다)은 2012. 9. 10. 원고에 대하여 "이 사건 각 지점은 인적 ·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구 지방세법(2014. 1. 1.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

- 8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한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구 자동차등록규칙(2013. 3. 23.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다.
- 따라서 원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기본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5조 제1항, 제6조 등에 따라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강남구청장이 정당한 과세권자이다"라는 이유로 74,574,179,020원의 취득세(가산세 포함)를 부과하였다(이하 "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"이라고 한다).
- 라. 이에 원고는 2012. 12.경 피고들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이중납부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,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"거부처분일"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(이하 피고들의 위 각 거부처분을 "이 사건 처분"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-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, 조세심판원은 2014. 6. 30.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.
- 마. 한편 원고는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, 조세심판원은 2014. 6. 26.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그 보관, 관리, 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.
-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41호로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5. 11. 27.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
- 위 판결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(서울고등법원 2016누30080호) 계속 중이다.

#### 【이유】

#### 11. 처분의 경위

- 가. 원고는 2001. 7. 4. 자동차시설대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, 그 법인등기부상 본점, 지점 등기 내역은 순차로 아래 표 1, 2와 같다(이하에서 표 2. 기재 각 지점을 순번에 따라 "창원지점, 인천지점, 부산지점, 고양 지점"이라 하고, 통틀어 "이 사건 각 지점"이라고 한다).
- [표 1]기간본점 소재지2001. 7. 4. ~ 2003. 3. 24.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2003. 3. 25. ~ 2012. 6. 4.서울 강남구 논현동 70-132012. 6. 5. ~ 현재서울 중구 퇴계로 100, 11층 1101호
- [표 2]순번설치일자지점 소재지이전일자지점 소재지12002.1.2.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56(봉암동) 22003.7.25.인천 남동구 간석동 556-22012.11.15.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32, 상가 비동 101호(송도동, 센트럴파크1차)32003.8.4.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4-322, 3층2005.3.31.부산 진구 전포2동63242002.1.2.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0302003.3.18.고양 시 일산구 장항동 852 현대에뜨레보 빌딩 101, 102호
- 나. 원고는 2011. 1. 1.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(이하 통틀어 "이 사건 리스차량"이라고 한다)를 취득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 사건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을 마치고, 그 무렵 위 각 지점을 관할하는 도지사, 광역시장 으로부터 징수권을 위임받은 피고 창원시장(창원지점),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(인천지점), 피고 부산광역시차 량등록사업소장(부산지점), 피고 고양시장(고양지점)에게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취득세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(이하 "이 사건 취득세"라고 한다)를 자진신고·납부하였다(단, 이 사건 리스차량의 등록관청은 피고들인 경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).

다.

-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"강남구청장"이라고 한다)은 2012. 9. 10. 원고에 대하여 "이 사건 각 지점은 인적 ·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구 지방세법(2014. 1. 1.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 8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정한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이 사건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구 자동차등록규칙(2013. 3. 23.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리스차량 취득 당시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이다.
- 따라서 원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지방세기본법(2013. 1. 1.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5조 제1항, 제6조 등에 따라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강남구청장이 정당한 과세권자이다"라는 이유로 74,574,179,020원의 취득세(가산세 포함)를 부과하였다(이하 "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"이라고 한다).
- 라. 이에 원고는 2012. 12.경 피고들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이중납부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,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"거부처분일"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(이하 피고들의 위 각 거부처분을 "이 사건 처분"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-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, 조세심판원은 2014. 6. 30.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.
- 마. 한편 원고는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, 조세심판원은 2014. 6. 26. 이 사건 리스차량의 취득 당시 그 보관, 관리, 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.
-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41호로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5. 11. 27. 강남구청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
- 위 판결에 대하여 강남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(서울고등법원 2016누30080호) 계속 중이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